

의안번호	2210089
의 퇴 인	김민석의원
회 답 일	2025. 7. 4.
추 계 번호	25C227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각 지원비율에 따라 연평균 66억원~132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331억원~6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26조제2호의2 및 안 28조제3항 (결핵의무검진 소요비용 지원)	50% 지원	6,195	6,396	6,604	6,918	7,039	33,052	6,610
	75% 지원	9,292	9,594	9,905	10,227	10,559	49,577	9,915
	100% 지원	12,389	12,792	13,207	13,636	14,079	66,103	13,2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제2호의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11조제1항 ¹⁾ 에 따른 결핵검진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량규정
2	안 제28조제3항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6조제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 1)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6조제2호의2(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	하나의 재정수반요인으로 간주하여 추계
2	안 제28조제3항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관·학교에 결핵검진등(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하 “(잠복)결핵검진”)²)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이를 보조할 경우 따른 비용임
- (잠복)결핵검진 소요비용은 대상자 수에 각 검진단가와 실시주기, 검진이행률을 적용하여 추계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 2) 결핵검진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전파 질환’을 파악하는 것으로, 임상증상(발열, 전신피로, 호흡곤란, 혈담 등)과 흉부 X-ray상 이상소견, 결핵균검사(도말양성, 결핵유전자 검출(PCR), 결핵균 배양) 등을 통해 진단함.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균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임상적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결핵검진은 문진과 X-ray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잠복결핵검진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검사를 통해 진단(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19.5.27.)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 **(대상자 수)** 본 추계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의무 실시 대상은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학교에 소속된 자로, 본 추계에서는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산후조리시설, 초·중등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
 - － 각 통계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수는 추계기간 동안 2022~2024년 경제활동인구³⁾의 연평균 증가율(1.2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2025년 기준 1,849,794명)

[표 2]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대상자 수	자료출처(기준연도)
의료기관	975,6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건강보험통계연보'(2023)
산후조리원	10,105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4년)
학교	461,67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24)
유치원	60,26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24)
어린이집	297,067	교육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2024)
아동복지시설	9,57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4)

주: 상기 기관 종사자 수는 각 통계별 조사 시점의 인원수로, 실인원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 **(검진단가)** 결핵검진 단가는 결핵검진(흉부X선검사)과 잠복결핵검진(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이하 “IGRA”)으로 구분하고 의원급 요양기관의 검진단가를 적용
 - － 잠복결핵검진은 면역학적 검사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중 하나를 실시하는데, 본 추계에서의 잠복결핵검진은 당일 검사가 가능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 2025년 4월 기준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비용은 의원급의 경우 8,99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850원이고, 잠복결핵검진(IGRA) 비용은 의원급의 경우 52,69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030원임
 - － 추계기간 동안 검진단가는 2026년의 경우 1.93%⁴⁾ 증가하고, 그 이후는 2024~2026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의 연평균 증가율(1.96%)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4) 2025.5.31. 2026년 건강보험 평균 수가(환산지수)인상률은 1.93%로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시주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⁵⁾에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잠복결핵검진은 해당 산업 입직 시 또는 휴직·파견 종료에 따른 업무 복귀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 다만, 결핵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흉부X선 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의 50%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별도로 검진하는 것으로 함
 - － 현행법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흉부X선 검사를 받은 경우 본 법률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 국가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회씩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의 50%는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흉부X선 검사를 수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추계에서 비사무직 근로자(국가건강검진 매년 수검)는 제외
-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각 기관의 입직자 수 및 휴직·파견 복귀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산업 입직률 5.1%를 적용
 - － 참고로, 교육서비스업 입직률은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입직률은 3.2%이나, 휴직·파견 종료에 따른 업무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각 산업의 입직률을 적용하는 대신 전체산업의 입직률(5.1%)을 적용
- (검진이행률) 질병관리청에서 2024.4~9월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조사에 따른 결핵검진율 88.6%, 잠복결핵검진율 93.2%를 적용

5)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표 3] (잠복)결핵검진 소요 비용 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상자 수(명)		1,873,215	1,896,932	1,920,950	1,945,272	1,969,901	9,606,269	1,921,254
검진 단가 (원)	결핵검진 (흉부X선)	9,166	9,345	9,528	9,715	9,905	—	—
	잠복결핵 검진 (IGRA)	53,721	54,772	55,844	56,936	58,051	—	—
검진 비용 (백만원)	결핵검진 (흉부X선)	7,606	7,853	8,108	8,372	8,643	40,583	8,117
	잠복결핵 검진 (IGRA)	4,783	4,939	5,099	5,264	5,435	25,521	5,104
합계(백만원)		12,389	12,792	13,207	13,636	14,079	66,103	13,221

주 1) 검진비용은 대상자 수에 검진단가(의원급 단가 적용), 실시주기(결핵검진은 국가건강검진 고려 50% 적용, 잠복결핵검진은 입직률 5.1% 적용), 검진이행률(결핵검진 88.6%, 잠복결핵검진율 93.2%)을 적용하여 산출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비율) 개정안 제26조제2호의2에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50%, 75%, 100%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26조제2호 의2 및 안 28조 제3항 (결핵의무검진 소요비용 지원)	50% 지원	6,195	6,396	6,604	6,918	7,039	33,052	6,610
	75% 지원	9,292	9,594	9,905	10,227	10,559	49,577	9,915
	100% 지원	12,389	12,792	13,207	13,636	14,079	66,103	13,2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assembly.go.kr